

보상금 결정 통지서(기각용)

접수번호	명예회복위	보상	제	호
희생자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1. 귀하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불임의 보상금 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불임의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붙임: 1. 보상금 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의 신청서 용지 1부. 끝.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